

순천시의회 공고 제2018-3호

「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에 대하여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, 전문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8년 1월 12일

순 천 시 의 회 의



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1. 폐지이유

- 「청탁금지법」 시행(2016.9.28.)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가능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시행, 「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 개정·시행(2017.9.29.), 「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」 제정(2016.4.9.)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공익신고 보상제 도입 운영
- 「순천시 공무원행동강령」 시행(2016.12.7.)으로 순천시 공무원이 가져야 할 행동기준 규정
- 이와 같이 다른 법률·조례·규칙 및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음

2. 주요내용

- 현행 「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」 폐지

3. 입법예고 기간 : 2018. 1. 12. ~ 1. 17.

4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1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pjw1028@korea.kr

2) 주소 :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

3) 팩스 : 061-749-4773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(전화 : 061-749-495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. 끝.

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